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

(2025년)

2026년 7월 27일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식회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

(2025년)

1.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체계

1) 회사 개요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주)(영문명: Hyundai Investments Co., Ltd.)은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2000년 7월 현대해상투자자문(주)(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된 이래 2007년 12월 현행 사명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자산운용업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2009년 2월 종합자산운용업 인가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자본금을 확충하는 한편 2010년 및 2011년 매일경제 한국펀드대상 우수운용사 선정,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종합평가 A등급 획득 등 대외적으로 운용역량을 인정받아 왔으며, 2025년 7월 기준 운용자산(순자산 기준) 26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펀드 운용(AUM) 현황]

구분	자산유형	AUM(억원)		주요 현황
		전체	책임투자	
국내	주식	9,929	6,111	기금·보험사 등 액티브/인덱스 주식형 일임
	주식혼합	909		
	채권혼합	653		
	채권	96,717		주요기금 일반 채권형 및 시중은행 레포펀드
	재간접	265		
	단기금융	17,830		국공채법인MMF
	파생형	4,938		주요기금 채권 매칭형 사모펀드
	부동산	7,045	542	
	특별자산	12,380		선순위 대출채권 및 인프라 사모펀드
	혼합자산	1,077		-
	기타	3,150		PEF
국내 소계		154,893	6,653	

구분	자산유형	AUM(억원)		주요 현황
		전체	책임투자	
해외	재간접	813		EMP 공모펀드
	파생형	1,610		
	부동산	28,901		주요기금 일임 및 보험사 사모펀드
	특별자산	49,056		주요기금 일임 및 카드사 사모펀드
	혼합자산	17,787		중앙회 및 공제회 등 해외기업금융사모펀드
	기타	-		
해외 소계		98,167		
수탁고 총계		253,060	6,653	

주석) 출처 : 금융투자협회 회사별 설정 규모 공시(<https://freesis.kofia.or.kr>)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

당사는 2018년 7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선언하였으며, 이에 앞서 2013년 3월 SRI사모증권투자신탁 1호를 설정하고 2014년 6월 책임투자형 연기금 상품을 설정하는 등 책임투자 관련 운용 경험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2020년 2월 및 2024년 1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2025년 2월에는 전통자산부문 책임투자활동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자산군 현황]

구분	유형	적용 여부
상장주식	국내	적용
	해외	적용
채권	국채·지방채·은행채·특수채·회사채 등	적용
대체투자	부동산 및 인프라	미적용
	사모	미적용
	벤처투자	미적용
기타	-	미적용

3) 수탁자 책임 이행 조직

당사는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구성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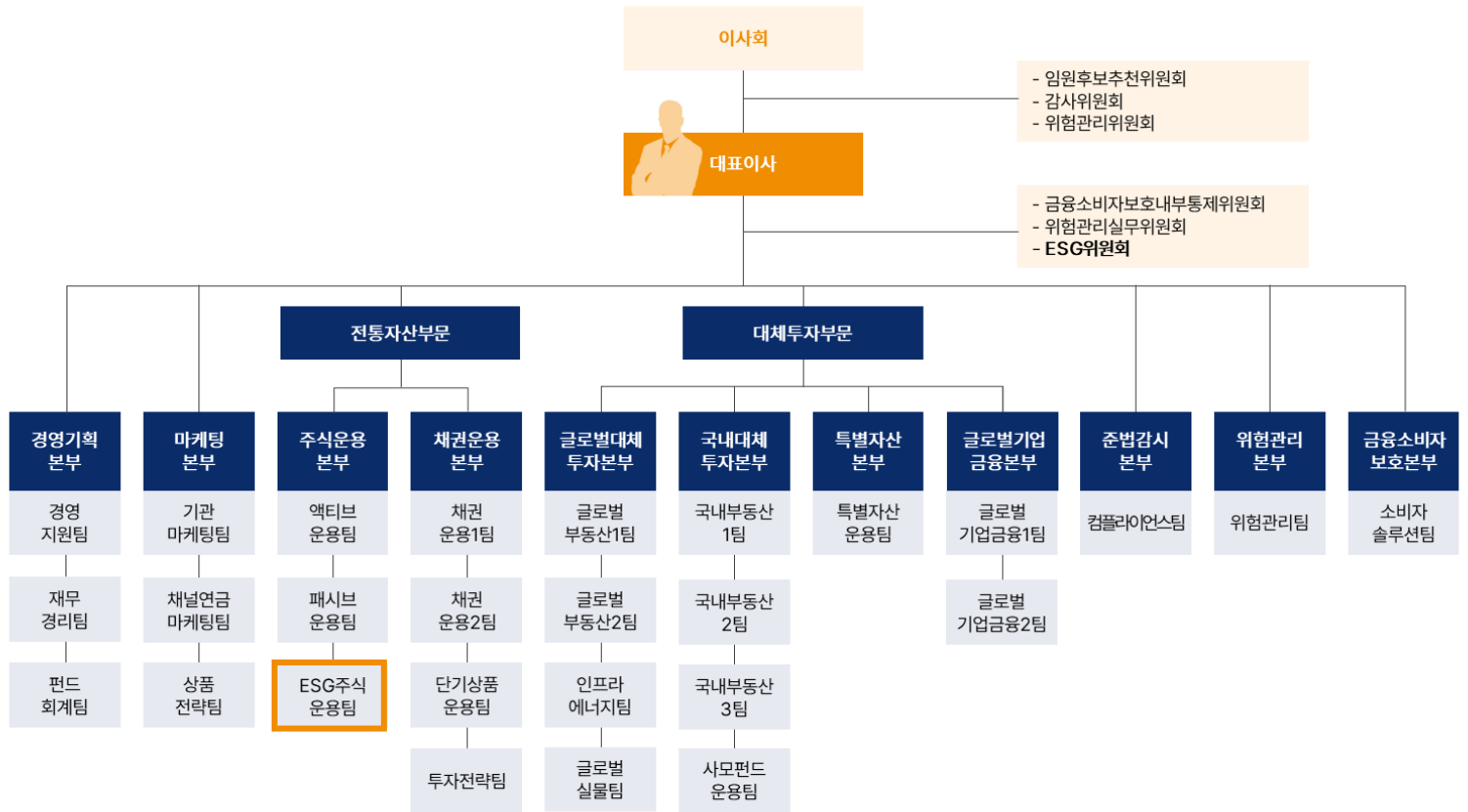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식운용본부에서 운용·리서치 업무와 수탁자 책임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운용본부 내 ESG주식운용팀이 인게이지먼트 활동, ESG평가 및 평가시스템 구축, ESG위원회 관련 실무 등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탁자 책임활동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hdfund.co.kr/esg/stewardship-code>).

구분	성명	소속	이메일
책임자	이동환 본부장	주식운용본부	dhlee@hdfund.co.kr
담당자	백두진 팀장	ESG주식운용팀	pdjn000@hdfund.co.kr

[조직도]



4) 수탁자 책임 관련 주요 정책 체계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 정책」과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위 정책 및 지침을 모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체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선언 이후 8년간 점진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특히 2025년 2월 제정된 「전통자산부문 책임투자활동 지침」은 기존 원칙 중심의 선언적 정책을 실무 차원의 세부기준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관련 주요 정책 제정 및 공개 현황]

정책명	제·개정일	공개 경로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선언	2018.07.16	홈페이지 > ESG > 스튜어드십코드

정책명	제·개정일	공개 경로
이해상충 방지 정책	2018.07.16	홈페이지 > ESG > 스튜어드십코드 > 이해상충방지정책(https://www.hdfund.co.kr/esg/stewardship-code/0002)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2009.02.04 2024.01.09	홈페이지 > ESG > 스튜어드십코드 > 의결권행사규정(http://www.hdfund.co.kr/esg/stewardship-code/0001)
전통자산부문 책임투자활동 지침	2025.02.18	홈페이지 > ESG > 책임투자정책 > 책임투자 지침(https://www.hdfund.co.kr/esg/investment/0005)

2. 스튜어드십 코드 지지 의사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지지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내 원칙 및 이행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27일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승 호 (인)



1. 원칙별 이행 점검 결과

1) 원칙1 ; 수탁자 책임 정책

당사는 2018년 7월 16일 스톱워드십 코드 준수를 선언하며,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자산가치 향상을 위하여 코드의 7대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당사의 운용철학은 철저한 리서치와 팀 운영을 통한 장기적·안정적 초과수익 창출에 있으며, 재무·비재무 요소의 주기적 점검, 주주참여 활동, 의결권 행사 등을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정책은 국내 상장회사 주식 자산군에 적용되며, 의결권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이라는 원칙 아래 행사됩니다.

의결권 행사는 주식운용본부 운용조직 내 협의를 거쳐 주식운용본부장이 최종 결정하되, 필요시 의결권 행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관련 이해상충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와 유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관리됩니다.

또한 당사는 수행한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요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별첨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1부

2) 원칙2 ; 이해상충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 과정에서 거래관계, 소유지배구조, 겸직, 인적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통해 정보차단벽 설치, 제3자 전문기관 활용, 이해상충 우려 임직원의 업무 배제, 윤리강령 운영, 임직원 윤리교육 등의 관리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유형 및 관리방안]

유형	발생 상황(예시)	관리방안
거래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당사 고객·수익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보차단벽 설치, 제3자 전문기관 활용
소유지배구조에 의한	당사 계열사 또는 계열사와 거래·소유지배관계	정보차단벽 설치, 준법감

유형	발생 상황(예시)	관리방안
이해상충	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부서 사전점검
검직에 의한 이해상충	영업활동 등 검직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 임직원의 업무 배제
인적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임직원과 인적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 배제, 윤리강령 및 윤리교육 운영

아울러 2025년 중 상기 4개 유형에 해당하는 이해상충 사건 또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해상충 관리 내역(2025년)]

구분	내용
이해상충 관련 사건·사고	해당사항없음

[별첨2] 이해상충 방지정책,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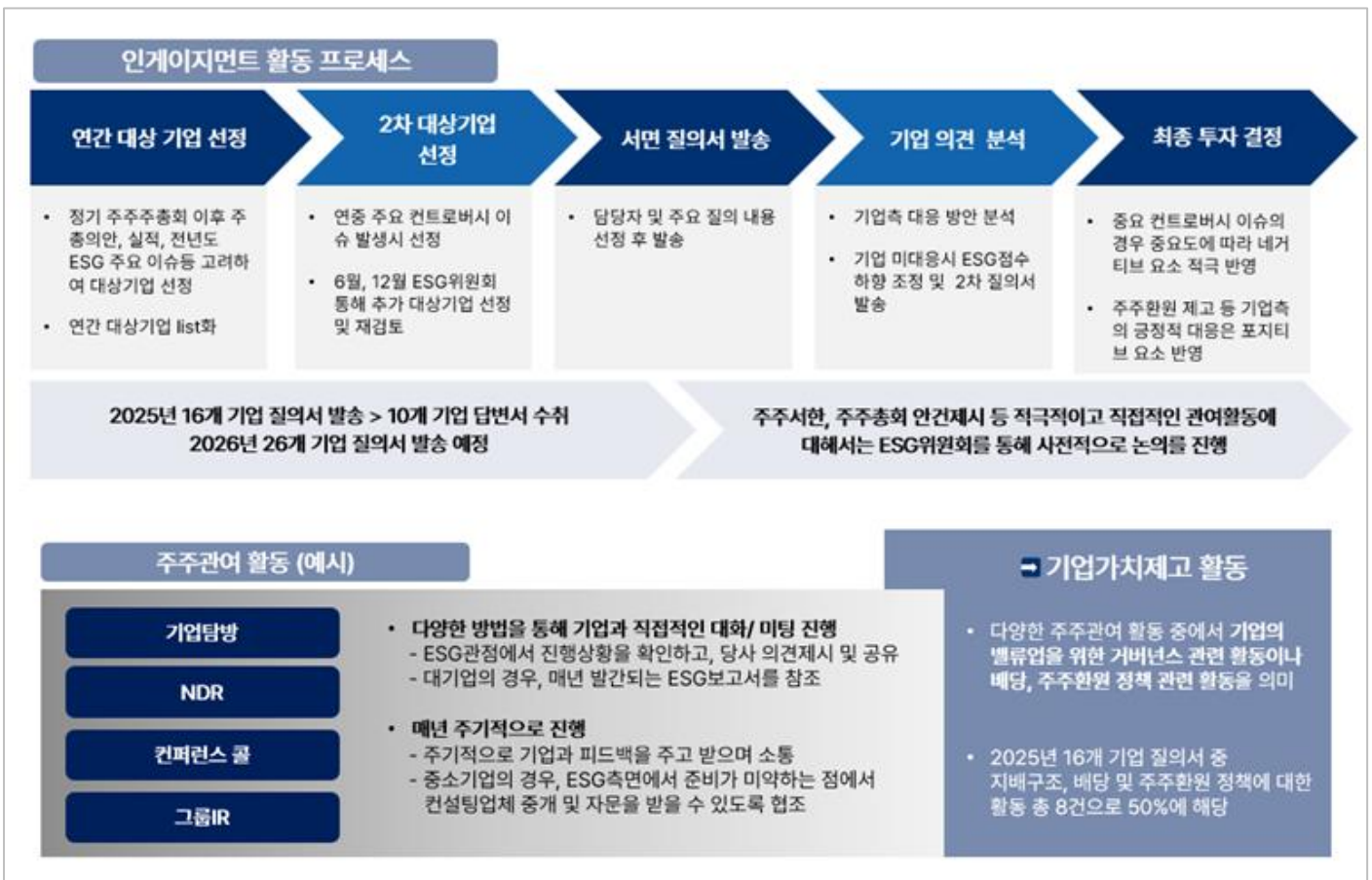
3) 원칙3 & 4 ; 주기적 점검 및 주주관여활동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비재무(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의 종합적 점검을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전문기관(서스틴베스트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 IR 팀과의 회의, 유선 인터뷰, 질의서 전달 등 우호적인 방식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주주 관여 활동 프로세스 및 예시]



주주관여 대상기업은 ESG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6월·12월 정기 재검토 및 컨트로버시 이슈 발생 시 수시 선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5년 수행한 주주관여활동은 총 348건으로 이 중 컨퍼런스콜(106건)과 NDR(166건)을 통한 간접적 소통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며, 서면 질의서를 통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은 16개 기업에 그쳤고 답변서 회신율은 62.5%로, 공식적·직접적 관여활동의 절대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이에 ESG위원회는 2026년 인게이지먼트 대상기업을 26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4. ESG위원회 운영 및 정책 고도화 현황」 참조).

[2025년 주주관여활동 내역(2025.01.01~2025.12.31)]

활동 유형	건수	비고
인게이지먼트 활동	16개	답변서 10개 수취(회신율 62.5%)
기업탐방	33개	
NDR	166개	
그룹IR	27개	대기업 중심 분기별 실시
컨퍼런스콜	106개	
합계	348개	

2025년 주주관여활동 중 모범사례는 당사의 관여활동에 대해 대상기업이 구체적인 개선조치로 화답한 사례로 서면·구두 관여활동이 실질적인 기업 관행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주관여활동의 실효성을 보여줍니다.

[주주관여활동 모범 사례(2025.01.01~2025.12.31)]

구분	사례1 : 중대재해 사고	사례 2 : IR활동 미대응
당사 대응	연초 2건의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교육 관련 프로세스 점검 요청	중소기업으로 IR담당자가 부재하더라도 정보공개의무에 따른 탐방 대응 필요성 의견 제시
기업 측 대응	협력사 대표와 안전·보건 협의체 매월 운영, 상시 현장점검 체계로 전환, 안전 시설·장비 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	IR담당자 부재로 전체 탐방 대응은 제한되나 월 1회 단체 미팅을 통해 기관·개인투자자에게 현황·계획 공유 약속

주석) 실제 기업명은 대상기업에 대한 공개적 평가·서술로 비칠 소지가 있어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특정 기업에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예: 평가점수 하향 조치 등)은 순화하

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관련 활동은 배당 및 주주환원(4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회신율은 75.0%(6/8)로 앞서 살펴본 주주관여활동(62.5%)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가치제고 관련 사안이 기업 입장에서든 대응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기업가치제고 관련 활동 내역(2025.01.01~2025.12.31)]

활동 유형	건수	비고
인게이지먼트 활동	8개	답변서 6개 수취(회신율 75.0%)
지배구조 개편 관련	1개	
배당 및 주주환원	4개	
자금조달 및 투자관련	1개	
이중 상장 리스크	2개	

주석) 개별 대상기업명은 시장 영향 및 대상기업 보호를 고려하여 유형별 집계로 대체하였습니다.

2025년 기업가치제고 관련 모범사례 중 A기업 사례는 답변서를 통해 구체적 지배구조 계획을 확인한 반면, B기업 사례는 답변 미수취로 당사 내부 평가에 소통 대응 이력이 반영되는 등 기업의 소통 대응 여부가 실제 평가·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가치제고 관련 모범 사례(2025.01.01~2025.12.31)]

구분	사례1 : 지배구조 개편(D기업)	사례2 : 주주환원(H기업)
당사 요청사항	핵심 사업부의 분할·상장 우려 및 계열회사 지분매각을 포함한 향후 지배구조 개편계획 문의	지분매입 관련 향후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및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 문의
기업 대응	답변서 수취 - 사업분할·상장 미검토, 계열회사 활용 방식의 재추진은 어렵다고 회신	답변서 미수취

주석) 실제 기업명은 대상기업에 대한 공개적 평가·서술로 비칠 소지가 있어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특정 기업에 불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예: 평가점수 하향 조치 등)은 순화하였습니다.

4) 원칙5 ; 의결권 행사

당사는 의결권 행사대상 기업을 의무기준과 내부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기준은 단일펀드 내 5% 이상 지분 보유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내부기준은 보유지분 기준 코스피 0.1% 이상, 코스닥 0.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 전략적 보유기업, 적대적 M&A, 기업합병·분할,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ESG위원회 논의를 거쳐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든 의결권 행사의 최종 의사결정은 주식운용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당사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의무기준 : 단일펀드 내 5%이상 보유 또는 단일펀드 내 100억 이상 - 내부기준 : 보유지분 기준 코스피 0.1%이상, 코스닥 0.2%이상 (향후 기준강화 예정) - 그 밖에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외부적으로 적대적M&A, 기업합병/분할, 지배구조 이슈가 존재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ESG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
안전분석	외부 자문기관과 당사 리서치 담당자의 협업 - 서스틴베스트 + 아주경제연구소의 안전분석 자문 서비스 이용 > 대부분 자문서비스와 같은 의견으로 결정 - 자문이 없는 안전이거나 자문받은 내용과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전적으로 리서치 담당자의 의견을 준용 - 당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의결권 행사
최종 의사결정 및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활동의 책임자(주식운용 본부장)와 준법감시인의 최종 검토 - 모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주식운용 본부장과 준법감시인의 결재를 통해 진행 - 주요 안건의 경우, ESG위원회를 통해 사전논의 및 검토를 진행

당사 ESG위원회에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원이 운용사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을 코스피 0.05% 이상, 코스닥 0.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기준 적용 시 2025년 기준으로 행사 대상 기업이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7개사로 현행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기준 및 현황]

구분	세부 기준	2025년 행사 현황
의무기준	단일펀드 내 5% 이상 보유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총 14개 기업
내부기준	보유지분 기준 코스피 0.1% 이상, 코스닥 0.2% 이상	코스피 2개, 코스닥 14개

당사의 의결권 반대율은 2020 ~ 2024년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 2025년 7.56%, 2026년(상반기 기준) 20.9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안건수 자체도 2024년(82건) 대비 2025~2026년 들어 증가(119건, 234건)한 가운데 반대표 행사가 함께 늘어난 결과로 형식적 찬성 위주에서 실질적 심사 중심의 의결권 행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2026년 수치는 연도 중 잠정치로 하반기 정기주총 결과에 따라 최종 반대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의결권 행사 활동내역(안건 기준, 투자일임계약 제외)]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행사 안건수	516	284	262	150	82	119	234
반대 안건수	0	10	5	3	1	9	49
반대율	0.00%	3.52%	1.91%	2.00%	1.22%	7.56%	20.94%

당사는 한국거래소 전자 공시를 통해 연 1회 안건별 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를 일괄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s://www.hdfund.co.kr/invest?type=etc>)에도 대상법인, 주총구분(임시/정기), 의안유형별 찬성·반대·행사·불행사 사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등 특정 의견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기준과 구체적 근거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 사유 실제 작성 예시]

의결권 대상법인	의안유형	찬성주식수	반대주식수	행사 및 불행사 사유
A전자	정관변경	136,240	-	변경되는 정관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정관변경	136,240	-	변경되는 정관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건,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2명으로 확대하여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주주의견 반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법 개정 내용에 부합, 주주 권익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므로 찬성
	정관변경		136,240	변경되는 정관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건. 임기 단축으로 인해 주주가 보다 자주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임기가 유연해지면서 회사가 복수 이사의 동시 선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회피, 임기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반대
	정관변경	136,240	-	변경되는 정관의 경우, 과거 상법에 따라 이익소각제도를 별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주식 취득 허용이 상법상 허용되어 조문의 삭제가 주주권익의 측면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찬성
	결산 및 배당	136,240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며, 당기 회사의 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
	이사의선임 및 해임	136,240	-	당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조항 A.2.4 (이사의 선임)에 의거 과거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추천된 후보가 회사의 경영 전략총괄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의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찬성
	이사의선임 및 해임	136,240	-	당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조항 A.2.9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 에 의거 과거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사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되었고, 당기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대주주, 계열회사와의 관계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임원보수	136,240	-	전기 대비 이사 총수는 감소, (10명 -> 8명) 보수한도 최고금액은 전년 대비 90억 증가한 450억원으로 증액하는 (전년 360억) 안건으로, 전년 한중회 전 대표이사의 사임 후 후임자 미지명을 감안시 실질 이사 수는 1명 감소되는 것이며, 회사의 경영성과, 주주 수익의 방향성 등을 고려 시 보수한도 변동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실지급률 등을 고려시 회사의 재무적 위험이나 주주가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
	자본구조	136,240	-	동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은 개정 상법이 정한 예외적 보유처분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5) 원칙6 ; 보고 및 공시

당사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관여활동과 의결권 행사 등 활동 기록을 보존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및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한국ESG기준원이 시행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총 41개 자산운용사 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이행점검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ESG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6) 원칙7 ; 전문성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계 활동은 주식운용본부(ESG주식운용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특정 사안은 준법감시부서 또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주식운용본부 내 ESG주식운용팀이 인게이지먼트 활동, ESG평가 및 평가시스템 구축, ESG위원회 관련 실무 등 수탁자 책임활동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SG주식운용팀 인력현황]

구분	이름	직급	근속년수	경력사항
1	백두진	팀장	3년 5개월	HDC자산운용 주식운용 BNK자산운용 주식운용 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ESG주식운용
2	박정안	팀원	4년 7개월	피데스자산운용 주식운용 코리아에셋증권 주식운용 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ESG주식운용
3	오동준	팀원	4년 1개월	아트만자산운용 주식운용 현재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ESG주식운용

담당 인력에게는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포럼·학술대회·세미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ESG주식운용팀은 매월 증권회사를 통한 ESG세미나를, 의결권 행사 시즌을 앞두고는 매년 서스틴베스트 등 외부기관의 '정기주주총회 시즌 Preview' 특별강의를 진행하여 안건별 모니터링 역량을 사전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미나 참석 현황]

주관	번호	일자	주제	참석자
증권회사	1	25.01.20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쟁점 논의	ESG주식운용팀 2명
	2	25.02.17	트럼프시대의 ESG	ESG주식운용팀 3명
	3	25.03.17	ESG와 방산	ESG주식운용팀 3명
	4	25.04.21	트럼프 관세와 EGS 불확실성	ESG주식운용팀 3명
	5	25.05.19	ESG관점에서의 원전산업	ESG주식운용팀 3명
	6	25.06.16	지배구조 뉴노멀 (일본사례1)	ESG주식운용팀 3명
	7	25.07.21	지배구조 뉴노멀 (일본사례2)	ESG주식운용팀 3명
	8	25.08.18	노란봉투법과 ESG	ESG주식운용팀 3명
	9	25.09.15	거버넌스 이슈 점검	ESG주식운용팀 2명
	10	25.10.20	경영권 분쟁과 ESG	ESG주식운용팀 2명
	11	25.11.18	에너지 대전환과 해상풍력	ESG주식운용팀 3명
	12	25.12.15	주요 연기금의 ESG투자 동향	ESG주식운용팀 3명

	13	25.03.20	24년 주총리뷰	주식운용본부 7명
	14	25.06.19	상법개정안	주식운용본부 7명
	15	25.09.04	ICJ와 NDC, 배출권거래제	주식운용본부 7명
	16	25.12.09	26년 연간전망 (ESG)	ESG주식운용팀 3명
외부기관	1	25.01.14	책임투자 지침 수립 관련	주식운용본부 7명
	2	25.02.19	25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프리뷰	주식운용본부 7명
	3	25.06.25	25년 상반기 ESG평가 결과 관련	주식운용본부 7명

당사는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관련 KPI를 도입할 계획이나, 2026년 7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가중치가 확정되지 않고 내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 방안 - 수탁자 책임활동 KPI 연동 추진계획]

추진 일정	내용
2026년(현재)	주식운용본부 대상 KPI 연동방안 내부 논의 중(세부 지표·가중치 미확정)
2027년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KPI 수립 및 주식운용본부 우선 적용
2027년 이후	전통자산부문, 대체자산부문으로 전사 확대

2. ESG위원회 운영 및 정책 고도화 현황

1) ESG위원회 개최 및 운영 현황

당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통자산부문장, 주식운용본부장, 채권운용본부장, 준법감시본부장, ESG주식운용팀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통해 책임투자활동 전반을 심의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개최된 ESG위원회에서는 ①2026년 인게이지먼트 대상기업 선정, ②서스틴베스트 2026년 상반기 ESG평가 결과보고, ③2025년 수탁자책임활동 이행점검 보고서(2025년 주총 의결권 행사 결과 포함), ④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기준 강화 등 4개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ESG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운용(주식·채권) 및 준법감시 부문의 본부장급 임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여도가 높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구성 현황(2026.07.27 기준)]

직책	담당	위원명
위원장	대표이사	김승호
위원	전통자산부문장	신재혁
위원	주식운용본부장	이동환
위원	채권운용본부장	박종호
위원	준법감시본부장	이동필
위원	ESG주식운용팀장	백두진

2) 2026년 인게이지먼트 대상기업 확대

당사는 매년 컨트롤로버시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회신 받아 ESG 투자전략에 반영하는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대상기업을 2025년 16개사에서 26개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기업 외에도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추가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2026년 인게이지먼트 대상기업 이슈 유형별 현황(총 26개사)]

이슈 유형	기업 수	주요 내용(예시)
환경·사회 리스크 대응	8개	중대재해, 환경사고, 공급망 ESG 대응, 노무 이슈 등
주주환원·배당(밸류업)	6개	배당정책,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계획 등
지배구조·상장구조 관련	5개	지주사 전환, 이종상장, 기업분할·피인수 등
사업·재무·공시 리스크	7개	유상증자, 불성실공시, 지정학적 리스크, 자금조달 등
합계	26개	

주석) 26개 대상기업의 실명 및 개별 선정 사유가 별도 관리되고 있으나, 관여활동 착수 전 특정 기업을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시장 신호 노출, 기업 이미지 훼손 소지, 관여활동의 실효성 저하 우려가 있어 이슈 유형별 집계로 대체하였습니다(개별 기업 리스트는 내부 관리자료로 보관합니다).

3) ESG 평가체계 고도화

당사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매년 상·하반기 발표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및 채권·기업어음 발행기업 ESG평가 결과에, 당사 자체 재무지표(성장성·안정성·수익성)를 가산 반영하

여 산출하는 자체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스틴베스트 등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결과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지배 구조 부문별 문항으로 구성된 당사 자체 ESG 내부평가시스템을 통해 업종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별도 평가합니다.

[ESG 평가체계 유니버스 현황(2026년 상반기 기준)]

구분	기업 수	비고
평가등급 기준 1차 유니버스	836개	외부 평가기관 발표 등급 기준
자체 평가 반영 후 Model Portfolio	252개	투자유니버스 대비 약 30%

주석) 등급 구간별 세부 배점(가산비율, 컷오프 점수 등) 산출식은 당사 고유의 운용전략에 해당하여 개요 수준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평가부터는 섹터 세분화 및 재분류, 지배구조·주주권리·이사 보수 평가방법 개선 등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며, 당사는 이를 자산군별 책임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판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평가 결과 2단계 이상 등급이 변동된 기업은 상승 11개사, 하락 7개사로 총 18개사입니다.

[ESG등급 변동 기업 현황(2025년 하반기 대비 2026년 상반기, 2단계 이상 변동)]

구분	기업 수	비고
2단계 이상 상승	11개	-
2단계 이상 하락	7개	-
합계	18개	외부 평가기관 등급 기준

주석) 세부 내역은 외부 평가기관의 상업적 평가 데이터로, 재게시 시 데이터 이용계약상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집계치만 공개합니다(세부내역은 내부 관리자료로 별도 보관합니다).

4)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기준 강화

ESG위원회는 정부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요구를 반영하여 내부기준을 코스피 0.1% → 0.05%, 코스닥 0.2% → 0.1%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강화 기준 적용 시 2025년 실적 기준 행사대상이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7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

습니다.

다만 금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않았으며, 세부 시행시기 및 예외기준 등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및 보완 사항

1)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대응

2026년부터 한국ESG기준원이 공모 집합투자업 인가를 보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자산운용사(총 41개사)를 대상으로 코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이행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ESG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이행 점검 결과 및 요구사항에 따라 정책·공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2) 수탁자책임활동 KPI 연동체계 구축

전문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KPI 연동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나 2026년 7월 현재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SG위원회는 이행 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핵심 사항으로 KPI 연동체계를 지목하였으며, 2027년 주식운용본부를 시작으로 전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의결권 행사 내부기준 강화 및 가이드라인 개정

당사는 2026년 하반기 중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기준 강화(코스피 0.05%, 코스닥 0.1%)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4)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코드 적용 확대 검토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주식 및 채권 자산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대체투자(부동산·인프라·사모·벤처투자) 자산이 전체 수탁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대체투자 자산군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2018.07.16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정직한 자산 관리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의 중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위하여 2018년 7월 XX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이하 '코드')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보존하고 증대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타인의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신의 성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코드의 7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통해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수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칙1 -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운용철학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운용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철저한 리서치와 팀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초과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재무 및 비재무 요소의 주기적 점검, 주주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 등과 같은 실천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이 투자대상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운용자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본 정책을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 자산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본적인 수단인 의결권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 및 고객의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행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은 특정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여 이행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 정책」과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별도 제정하였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투자의사결정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를 검토하여,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은 당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 자

산운용사의 고객 및 수익자에 대한 수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제정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상의 별도 정책을 당사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당사는 필요시 해당 정책을 개정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요소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 요소를 점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통적인 재무 요소 이외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리서치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비롯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와의 각종 대화, 질의서 전달 등 우호적인 방식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을 함에 있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며, 모든 주주관여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행됩니다.

당사는 재무, 비재무 요소의 주기적 점검 및 주주관여 활동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의 목적에서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제3자 전문기관의 권고 의견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주식운용본부 리서치 조직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 및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는 주식운용본부 운용조직 내 담당 인력 간 협력을 통해 검토하며, 주식운용본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 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은 준법감시부서와 유관부서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당사는 당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요약한 주요 내역을 당사 웹사이트에 공시하여 고객 및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및 수익자들이 수탁자 활동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관계 및 출자 구조 등으로 인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유형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대표적인 유형을 거래관계에 따

른 이해상충,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이해상충,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인적관계에 따른 이해상충으로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당사의 준법감시부서는 상기한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 또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차단벽의 활용 등을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이해상충 문제 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이해상충의 유형,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조직체계 등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링크\]](#)

원칙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수행하는 것은 성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당사는 점검 대상과 점검의 주체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가치를 보호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무성과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균형 있게 점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통적으로 수행되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당사의 내부자원만으로는 수많은 투자대상회사들을 모두 점검하여 성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는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제3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대상회사를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원칙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주주관여 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주주관여 활동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 자산군 내에서 선별적으로 수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자산군을 주주관여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당사의 주주관여 활동은 기업 IR팀과의 회의, 기업과의 유선 인터뷰 및 질의서 전달 등 우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상황 및 당사의 투자 정책, 내부 역량 등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주주관여 활동의 범위, 절차, 수준,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당사가 주주관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기관투자자의 방침이 투자 대상회사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와 투자대상회사가 목표하는 바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기반이 될 때 수탁자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주관여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주주관여 활동 여부와 실행 방식은 주식운용본부 내 리서치조직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 등은 준법감시부서와 유관부서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당사는 재무 요소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 요소를 고려하여 주주관여 대상을 선별합니다.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제3자 전문기관으로부터 재무 및 비재무 요소를 망라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습니다. 당사가 주주관여 활동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 경우,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우호적인 방식의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의 목적에서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제3자 전문기관의 권고 의견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부득이하게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입각하여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5% Rule)’의 적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원칙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으며 올바른 의결권의 행사는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 및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나아가 당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링크]”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경영환경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제, 개정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당사의 주식운용본부 내 운용조직 담당인력간의 협력을 통해 검토되고 주식운용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에 행사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 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문제 등은 준법감시부서와 유관부서간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나아가 의결권 행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2에 제시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당사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 자문기관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의 목적에서 당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제3자 전문기관의 권고 의견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여 고객과 수익자들로 하여금 충실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http://kind.krx.co.kr>)의 일괄 신고(연1회)를 통하여 안건별 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에도 주요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공시합니다.

원칙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할 것이며, 이러한 공시는 고객과 수익자로 하여금 당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주주관여활동,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기록으로 보존하며, 주요한 수탁자 책임 활동들을 당사 웹사이트에 공시합니다.[링크]

당사는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및 공시 방식을 개선할 것이며 이는 당사가 수행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고객과 수익자가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코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적절한 주주관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회사의 주기적 점검, 의결권 행사 및 주주관여 활동은 주식운용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실행하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부서 혹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투자대상회사를 분석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경영진, 이사회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사의 운용조직 인력들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기업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다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

행을 위해 담당 인력들에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포럼,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 자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당사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합니다. 당사는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부 인력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건전한 자본 시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별첨 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2018.07.16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하 '당사')은 고객과 수익자의 자산을 수탁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자로서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거래관계 및 출자구조 등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는 책임 있는 수탁자 활동을 위해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효과적인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배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사는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각 사업부의 이해상충 방지정책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와 협의합니다.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임직원은 지체없이 준법감시부서 혹은 유관 부서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거래관계와 소유지배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의 발달로 거래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 하여 검토합니다.

(1) 거래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와 거래관계 및 소유지배관계 등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소유지배관계 등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당사 계열사와 거래관계 및 소유지배관계 등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겸직에 의한 이해상충

- 잠재적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예: 영업활동 담당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인적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 당사 및 계열사 임직원과 인적 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정보차단벽 설치, 제3자 전문기관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차단벽 설치

당사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비밀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 시 정보차단벽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교류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제3자 전문기관 활용

당사는 이해상충의 사전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기업의 주주 또는 임직원과 인적 관계가 있는 등 기타 이해상충이 발생 할 수 있는 임직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회사는 이해상충을 포함한 기본적인 직무 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등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 교육

모든 임직원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 사항과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임직원이 준법감시부서와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고객 및 수익자에게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알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거래를 거절합니다